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31

발의연월일: 2021. 3. 16.

발 의 자:배진교·강민정·강은미

권은희 · 김교흥 · 류호정

심상정 · 용혜인 · 이은주

장혜영 · 조정훈 · 최강욱

허종식 · 양정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각급 국립·공립 학교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수 있음(안 제5조).
- 다.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함(안 제6조 등).
- 라.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
- 마. 공직자는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 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 사.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공공기관 감사·조사권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가족,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와 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이 자신 또는 가족과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됨(안 제12조)
- 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3조).
- 자.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4조).
- 차.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 도록 함(안 제15조).

- 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18조 및 제20조).
- 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제3자는 1년 이상의 징역(5억 이상 가중)과함께 그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이는 법 시행일 이전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부칙 제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 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3. "고위공직자"란 제2호의 공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나. 국회의원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라.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상임이사
 - 마.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특정직공무워

- 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조례·규칙 및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 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5.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 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공직자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 아.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 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보상 또는 이에 준하 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 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 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 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 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착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 우
-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고위공직자의 경우 제2조제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적이해관 계자 명단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항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회피·기피의 신청,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의 제출·공개 등에 필요한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직자 본인
 - 2.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공직자 본인이 속한 공공기관의 직무에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④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의 기록 및 관리와 신고·고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와 해당 민간 부문 관련 직무수행의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3.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직무
- 3.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직무
-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 7. 사건의 수사 및 재판·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⑦ 제6항의 고위공직자의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 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본다.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

계사업자(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 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분양·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

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거나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거나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시험에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는 채용에 관련한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③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 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④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 탁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속 고위공직자
 -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3.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5.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 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 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1항제6 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 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 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는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단체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사회 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직무상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 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공직자의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 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

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위반행위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

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 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 으로 돕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 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는 각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 중 "제2조제1호가목 중「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 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 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 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 2.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 3. 제8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

- 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와 해당 민간 부문 관련 업무의 제한
 - 5.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6.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와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취한 제3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 자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

- 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공무 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 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 록 강요한 자
-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 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2. 제6조를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3.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 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 자(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

직자

-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공직자
-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관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 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제공하는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부터 적용한다.
 - ② 제10조제1항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법 시행 이전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법 시행 이후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